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501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5,462,2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462,21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권관계

- 1) C은 2012. 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서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2. 2. 27.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 2) 그런데 C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고, D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2003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2. 27. 'C은 D에게 22,696,775원 및 그 중 11,666,669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7. 4. 30. C에게 송달되어 2017. 5. 16. 확정되었다.
- 3) 이후 D는 2018. 11. 14. E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9. 12. 13.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 4)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소22490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3. 'C은 원고에게 31,810,707원 및 그 중 11,666,669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 공시로 진행된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추완항소를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22나52112) 원고는 2022. 2. 28. 소를 취하였다.

나. 상속 및 등기관계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9. 6. 15. C의 아버지인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F가 2018. 11. 12.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G(법정상속분 3/13)과 자녀들인 H, I, 피고, C(법정상속분 각 2/13)과 차녀였던 J이 2015. 8. 18. 사망하여 그 자식들인 K, L(대습상속, 상속분 각 1/13)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위 상속인들은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위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5.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5. 6. 4. 채권최고액 132,200,000원, 채무자 N, 근저당권자 M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런데 위 2015. 6.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5. 11.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2014. 3.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6. 10.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18.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또한 이 사건 건물은 2020. 7. 3. 멸실되면서 지상 2층 단독주택이 신축되었고, 피고는 2021. 4. 22.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 1)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2. 2.경 D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카드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소22490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C이 추완항소를 하자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가 2016. 12. 22.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2003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7.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C이 2017. 4. 30.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7. 5.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D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의 시효기간 만료일은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5.경인데 원고가 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C의 추완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시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C에 대한 채권이 D로부터 E로 양도되었고, E로부터 원고에게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 C에게 도달하였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소2224902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당시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가 현출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소송에서 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한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D의 채권의 표시는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이고,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D의 채권의 표시는 계약번호 P로 상이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과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는 원채권자인 D가 내부적으로 C에 대한 카드론 채권을 분류한 계좌번호이고,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계약번호 P는 D가 2018. 11. 14. E에 여러 채권들을 양도하면서 그 중 채무자 C의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여한 번호로 위 계좌번호나 계약번호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번호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행권고결정이나 위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원금은 모두 11,666,669원으로 동일하고, 연체이율도 연 23.7%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권고결정과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채권은 동일한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2) 이 법원의 Q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당시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 외에도 R에 3,790,000원 및 6,030,000원, S에 9,500,000원, T에 6,015,000원 등 합계 37,00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3)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2003. 4. 22. 63,000,000원을, 2003. 7. 7.부터 2005. 7. 21.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는 장남으로 부친인 망인과 모친인 G의 생활비, 용돈, 병원비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망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이거나 특별한 기여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고,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안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계좌에서 2003. 4. 22. 6,3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금원이 실제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가 2003. 7. 7.부터 2005. 7. 21.까지 망인 명의의 적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적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피고가 망인 명의의 적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와 C은 형제지간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부친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거나 피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지, 보존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기여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0. 7. 3. 멸실등기가 이루어져 위 건물이 멸실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5. 18.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근저당권자 O의 근저당권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익자인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능이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상당하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근저당권자 M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분할협의 이후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스스로 위 근저당권은 가맹계약 기간 중에 발생할 장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일 뿐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근저당권자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2014년 공시지가 및 건물가액으로 평가한 307,389,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은 307,389,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위 부동산 중 C의 상속분 상당액은 47,290,6156원($=307,389,000\text{원} \times 2/13$, 원 미만 버림)이고,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21. 11. 4. 기준으로 35,462,213원(=원금잔액 11,666,669원 + 인수전 이자잔액 19,015,983원 + 인수후 이자잔액 4,779,561원)이다.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인 35,462,2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35,462,2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5,462,21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